

공 제 약 관

[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공제]



대 한 건 설 기 계 협 회

안 내 말 씀

우리 협회 『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신 계약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약자님께서서는 공제증권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시고 약관 내용을 꼭 읽어보셔서 이 계약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행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전화 : 02)2055-2552

※ 팩 스 : 0505)993-5555

※ 홈페이지 : <http://ins.kcea.or.kr>

건 설 기 계 업 자 배 상 책 임 공 제 약 관

이 공제계약의 가입 대상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의 2에 따라 대한건설기계협회(이하 “협회”라 함)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가입자로 합니다. 협회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손해보험사와 공제 업무 및 보상 등에 관한 공제계약 및 포괄적인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정관 및 공제 규정에 의해 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공제 사업을 시행합니다. 협회는 공제계약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공제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사고처리 및 보상 업무는 협회와 공제계약 및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그 책임하에 수행합니다.

이 공제계약의 보장범위는 이 공제 약관에 기재된 각 조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이 공제 약관을 잘 읽어보시고 이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및 보장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공제자」란 제2장 「피공제자」에서 정해진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공제 주요 약관

1) 보상하는 손해

-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2) 주요 면책사항

- 피공제자가 예기하였거나 피공제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신체장해
-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피공제자와 소속이 동일한 직원의 신체장해 및 그 소속회사의 재물손해
- 건설기계 조종면허 없이 건설기계 조작으로 발생하는 손해
- 건설기계의 통상적인 용도에 따르지 않은 작업으로 발생한 사고
-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도로에서 주행 중 발생한 사고. 단,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경우 도로에서의 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는 보상합니다.
- 건설기계의 허용된 사용 능력을 뚜렷이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 단, 피공제자가 손해 발생의 원인이 사용 능력의 초과와 무관함을 입증할 때는 보상
- 비영업용 건설기계(자가용, 관용)를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 소유·점유·임차·사용하거나 보호·관리·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 행위를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물적손해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는 보상
- 물적손해확장담보를 추가특별약관을 가입하더라도 다음의 손해는 면책
 - 보석류 - 금, 은 등 과 같은 모든 보석
 - 화폐류 - 화폐, 유가증권, 인지 등과 같은 모든 화폐
 - 도자기와 그 제품 - 도자기 및 도자기를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제품
 - 유리와 그 제품 - 유리 및 유리를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제품
 - 담배와 그 제품
 - 화장품 및 의약품, 가축류 및 계란, 시계, 모피류, 서화류, 골동품, 주류
- "폭발위험", "붕괴위험", "지하매설물 위험" 면책
 - 폭발위험 : 파열 또는 폭발로 발생한 재물손해
 - 붕괴위험 : 구축물의 물적손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재물에 대한 손해
 - 구축물의 물적손해라 함은 비탈작업, 굴착, 매립, 터널뚫기, 흙쌓기 및 방축작업 또는 이전, 떠받치기, 지지건축, 건물이나 구축물의 철거, 구축 또는 빌딩 및 구축물의 구축대 철거나 재구축을 말합니다.
 - 지하매설물 위험 :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물에 입힌 손해
 - 지하매설물 손해 위험이라 함은 비탈작업, 포장, 굴착, 착공, 매립, 흙쌓기 또는 파일을 박기 위하여 기계 설비를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지면 및 수면 아래에 있는 동력선, 도관, 파이프, 하수관, 탱크 터널 및 이와 유사한 물건과 그 부착물에 입힌 손해를 말합니다.

제1장 보 장 범 위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 보상하는 손해

- a. 피공제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음.)
 - (2) 사고 발생 후 피공제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3)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4) 피공제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5) 공제증권 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b. 「신체장해」손해는 「신체장해」로 인한 간호, 휴업손실 및 사망으로 청구되는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합니다.
- c. 「재물손해」의 지급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아래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항목	지급 기준
1. 수리비용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기준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2. 교환가액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3. 대 차 료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0%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4. 휴 차 료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5.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공제계약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a. 피공제자가 예기하였거나 **피공제자의 고의로** 발생한 「신체장해」또는 「재물손해」. 그러나 신체 또는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는 보상합니다.
- b.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1) 「보장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2) 계약이 없었을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 책임
- c. 근로자의 재해보상, 불구폐질급부, 또는 실업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책임
- d. 아래에 열거한 사람에게 입힌 「신체장해」
 - (1)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신체장해」
 - (2) 위(1)의 결과로 그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입은 손해
 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1) 피공제자가 사용자로서 또는 다른 자격으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 (2) 신체장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환급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경우. 그러나 보장계약상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e. 다음으로 기인하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 (1)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에 의한 건설기계의 운송**
- f. 선전포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수반되는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전쟁에는 내란, 폭동, 반란 또는 혁명이 포함됩니다. 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은 계약상의 가중책임을 한하여 적용합니다.
- g. 아래의 「재물손해」
 - (1)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
 - (2) 피공제자가 판매, 양도 또는 포기한 시설로서 「재물손해」가 그 시설의 일부에서 발생

제2장 피 공 제 자 의 범 위

피공제자는 공제 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공제자의 직원 및 기명 피공제자가 공제 증권에 명기된 건설기계의 소유, 사용, 관리를 허락한 개인 및 법인(법인의 직원 포함)을 포함합니다.

단, 위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건설기계 정비업, 탁송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는 개인 및 법인은 피공제자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위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건설기계 조종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사항입니다.

제3장 보 상 한 도 액

1. 협회는

- a. 피공제자의 수
- b. 손해배상청구의 건수 또는 제기된 소송의 수
- c.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수를 불문하고 협회가 지급할 보상한도액은 공제 증권에 기재된 금액으로 합니다.

2. 보상한도액은 협회가 지급할 최고액을 말합니다.

제4장 일 반 조 항

1. 파산

협회는 피공제자가 파산 또는 지급불능이 되어도 공제 계약상의 책임은 협회와 공제계약 및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2. 사고발생,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시의 피공제자의 의무

- a. 피공제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의 사항을 즉시 협회에 알려야 하며 알려야 합니다.
 - (1) 「사고」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발생했다는 것.
 - (2) 피해자 및 증인의 성명 및 주소 등
- b. 피공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이 제기되면 피공제자는 협회에 이를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c.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1)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에 관련한 청구서, 통지서, 소환장, 기타의 서류를 받는 즉시 사본을 협회에 제출할 것.

할 때

(3) 피공제자간의 **보관, 관리 또는 지배하에 있는 동산**

(4) 피공제자가 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는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작업을 하는 부동산의 특정부분의 손해가 그 작업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h.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연료, 기름, 윤활유, 냉각물질 등)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i.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려짐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j.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k. 건설기계 자체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로서 건설기계 제작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l. 『제6장 특별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장제외 특별약관

추가지급조항

협회는 협회가 방어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1. 협회가 지출한 모든 비용

2. 증권상의 보상한도 이내의 보증금액에 대한 차압해제보증보험료. 그러나 협회는 차압해제증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3. 피공제자에게 부과된 모든 소송비용

4. 협회가 지급하는 판결액에 대한 이자. 다만, 협회가 이 공제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다면 통지 후의 예비판결의 이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5. 판결확정 후에 발생하는 판결액에 대한 이자. 다만, 협회가 이 공제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판결액의 일부를 법원에 지급, 지급제의, 또는 공탁할 때까지 발생한 것에 한합니다.

추가지급조항에서 보상하는 비용은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상합니다.

- b. 이 공제증권에 선납공제료로서 기재된 공제료는 예치공제료에 불과하여 공제 기간이 끝난 후 해당 기간에 대한 받을 공제료를 정산합니다. 계약자 및 기명피공제자는 정산공제료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납입하여야 하며 선납공제료가 경과기간에 대한 공제료를 초과할 때에는 협회는 계약자 및 기명피공제자에게 초과금액을 환급합니다.
- c. 계약자 및 기명피공제자는 공제료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며 협회의 요청에 따라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진술사항

협회는 이 공제증권의 다음 사항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a. 증권 기재사항이 정확하고 완전한 것이며
- b. 그 기재사항은 피공제자가 협회에 알린 사항과 일치하고
- c. 협회는 피공제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공제증권을 발행한 것.

7. 피공제자의 분리

보상한도액 및 기명피공제자에게 이 공제계약상 특별히 양도한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는 이 공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a. 기명피공제자를 단독기명피공제자로 간주하고
- b.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이 제기된 각 피공제자별로 이 공제계약을 적용합니다.

8. 대위권의 이전

이 공제계약에 따라 협회가 손해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 경우 협회는 피공제자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합니다. 피공제자는 손해발생 후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협회의 요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던가 협회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행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9. 해지

- a. 증권에 기재된 계약자 및 기명피공제자가 이 공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통지서를 협회에 발송함으로써 해지됩니다.
- b. 협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공제료의 미납으로 해지할 경우 해지효력 발생일로부터 21일 이전에 계약자 및 기명피공제자에게 해지통지를 하면 해지됩니다.
 - (2) 다음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해지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계약자 및 기명피공제자에게 해지통지를 발송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협회가 안 때로부터 30일이 지났거나 협회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제계약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 ②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③ 피공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된 때

- (2) 협회가 기록이나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할 것.
- (3)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에 관한 조사, 합의해결 또는 응소에 대하여 협회에 협조할 것.
- (4) 이 공제에서 보장되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타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협회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할 것.
- d. 응급처치비용을 제외한 어떤 비용도 협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급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3. 협회에 대한 소송

이 공제계약하에서는 누구든지 아래의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 a. 협회와 함께 공동 피고로 참가하거나 피공제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협회를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 b.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모든 조건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협회를 상대로 이 공제증권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

사실심리를 거친 후에 합의에 따른 화해 또는 피공제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를 보상 받기 위하여 누구나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회는 이 공제증권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나 이 공제에서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합의에 의한 화해란 협회, 피공제자 및 손해배상청구권자나 그 법률상의 대리인이 서명한 화해서 및 보장제외증서를 말합니다.

4. 다른 보험과의 관계

- a. 협회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c」를 따릅니다.
- b. 「a」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는 보험으로서 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
- c. 보험금의 분담

-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협회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2)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1)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3)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협회의 (1)에 의한 지급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5. 공제료 정산

- a. 이 공제계약의 공제료는 협회가 정하는 방법 및 요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④ 아래 약관 『12. 조사(손해사정)』에서 정한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 c. 협회는 계약자 및 기명피공제자의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 d. 해지통지에는 해지 효력 발생일을 명기하며, 공제기간은 해지 효력 발생일에 끝납니다.
 - e. 이 계약의 해지에 따라 협회가 공제료를 환급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환급공제료를 지급합니다. 협회가 해지한 때는 일할로 계산한 공제료를 환급합니다. 계약자가 해지한 때에는 이 약관의 **[별첨] 단기요율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공제료를 뺀 잔액을 지급합니다. 환급공제료가 지급되기 전이라도 해지효력은 유효합니다. 단,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공제금이 지급되어 공제가입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어도 환급공제료는 없습니다.**
 - f. 통지를 한 경우 통지 증명만으로도 충분한 증명이 됩니다.

10. 변경

이 공제증권은 공제계약에 관한 피공제자와 협회의 모든 합의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증권에 기재된 계약자 및 기명 피공제자는 협회의 동의를 얻어 이 공제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증권의 공제계약 조건은 협회가 발행하는 배서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제외되며 그 배서는 이 공제증권의 일부가 됩니다.

11. 장부 및 서류의 조사

협회는 공제기간 중 또는 공제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언제든지 이 공제 증권과 관련되는 피공제자의 장부 및 서류를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12. 조사(손해사정)

협회는 아래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 a. 수시로 조사를 하는 것
- b. 협회가 발견한 상황을 피공제자에게 통지하는 것
- c. 변경을 권유하는 것

조사, 통지, 권유사항은 공제가입의 적합성과 공제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협회는 안전도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또는 일반대중의 건강이나 안전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회는 그 사항이

- a. 안전 또는 건전하다거나
- b. 법률, 규칙, 시행령 또는 어떤 기준에 합치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협회뿐만 아니라 공제에 관한 조사, 통지 또는 권유를 하는 요율산정기관, 자문기관, 요율제공기관 또는 기타 유사한 기관에도 적용됩니다.

13. 공제료

증권에 기재된 계약자 및 기명피공제자는, 협회에 대하여 모든 공제료 납입에 대한 책임을 지며, 협회가 지급하는 환급공제료의 수취인이 됩니다.

14. 권리 및 의무의 양도

피공제자가 사망할 경우를 제외하고 피공제자가 이 증권하에서 갖는 권리 및 의무는 협회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양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피공제자의 권리 및 의무를 갖습니다.

피공제자의 법정대리인이 결정되기까지는 피공제자의 임시대리인이 그 재산관리의 범위 내에서 피공제자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제5장 용 어 의 정 리

1. 「자동차」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해 설계된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부 차량, trailer 또는 semi-trailer 및 이들에 장착된 장치를 말합니다.
2. 「신체장해」라 함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3. 「보장지역」이라 함은 아래의 지역을 말합니다.
 - a. 한국(부속영토 및 재산포함) 또는 공제 증권에 기재된 국가
 - b. 공해 또는 공공. 그러나 장해 또는 손해가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또는 그 국가를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에 발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4. 「손상재물」이란 아래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실용성이 감소된 피공제자의 생산물 또는 피공제자의 작업 이외의 유체물을 말합니다.
 - a. 결함, 불완전, 부적합 또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피공제자의 작업이 관련 되었을 때나
 - b. (1)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피공제자의 작업을 수리, 대체, 조정 또는 제거하거나
(2)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재물을 수리복구하여 사용할 수 있어도 피공제자가 계약상의 조건을 수행할 수 없을 때
5. 「보장계약」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 a. 시설의 임대차 계약
 - b. 철로부설 사용계약
 - c. 차량이나 보행자 전용 철도 건널목 동일평면에 관한 지역권(地域權) 또는 사용권 계약
 - d. 기타의 지역권(地域權). 그러나 철도 부지 내 또는 부지로부터 50feet까지의 인접지에서 행하는 건설작업이나 해체작업에 관한 지역권계약은 제외합니다.
 - e. 자치단체를 위한 작업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조례에 따른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계약
 - f. 승강기 보수계약
 - g. 신체장해나 재물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타인이 제 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피공제자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피공제자의 산업과 관련된 계약 불법행위책임이라 함은 계약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제6장 특 별 약 관

공제료 분납 특별약관

1. 이 공제 증권에 의거한 공제료는 하기의 2가지 분납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a. 2회 분납

(1) 가입일 당시 1차 납입 의무액: 총 공제료의 60%

(2) 2차 납입 의무액: 가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총 공제료의 40%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분납액이 상기 납입기한까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협회는 동 납입기한으로부터 해당 분납 액이 지급되는 날 까지 동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 본 조항에 의거하여 야기되는 공제금이 이 공제증권상에서 납입된 분납 공제료를 초과할 경우 현재 미지불된 공제료 분납액은 계속 납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대위권포기특별약관(임차인)

협회는 이 공제계약의 제조건, 면책사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기명피공제자의 임차인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공공도로에서의 사고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공제계약은 공공도로(도로교통법 준용)에서 주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공공도로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합니다.

이 보장제외 특별약관에도 불구하고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경우 공공도로에서의 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는 공공도로에서 주행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합니다.

다른 모든 공제조건은 변동 없습니다.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보장계약」에는 아래의 계약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a. 아래의 사유로 발생하는 장애나 손해로 건설기사, 토목기사, 측량기사에 대한 보상
 - (1) 지도, 도면, 의견서, 보고서, 조사서, 주문변경서, 설계 또는 명세서의 작성 승인 또는
이의 불이행
 - (2) 감독이나 지시 소홀
- b. 피공제자가 건축기사, 토목기사 또는 측량기사로서 위 「가」의 직무를 포함하여 감독, 검사, 기타 기술용역제공 등의 전문직업상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계약
- c. 피공제자가 임차한 시설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는 계약

6. 「화물의 적재나 하역」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재물의 취급을 말합니다.

- a. 재물이 항공기, 선박 또는 「자동차」에 옮길 것을 승낙한 장소로부터 재물이 이동한 후에
- b. 항공기, 선박 또는 「자동차」내에 있는 동안
- c. 항공기, 선박 또는 「자동차」로부터 최종목적장소에 재물이 이동하고 있는 동안. 그러나 「화물의 적재나 하역」에는 손수레 이외의 항공기, 선박 또는 「자동차」에 장착되어있지 않은 기계장치로 재물을 옮기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7.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실상 같은 종류의 일반적으로 유해한 상태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8. 「재물손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a. 유체물에 입힌 물리적 손상을 말하며, 이에 따르는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를 포함합니다.

9. 「소송」이란 이 공제에서 보상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정절차를 포함합니다.

비영업용 건설기계 용도와 사용 보장제외 특별약관

협회는 이 증권의 제조건, 제규정 및 특별약관에 관계없이 비영업용 건설기계가 영업용으로 사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등록 말소 건설기계 보장제외 특별약관

협회는 이 증권의 제조건, 제규정 및 특별약관에 관계없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의해 등록이 말소 된 건설기계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하는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벌과금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공제계약은 벌금, 과료 또는 형벌이나 징계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기초공제 특별약관

1. 신체장해 배상책임 및 재물손해 배상책임 보장에 대하여協회는 증권에 기재된 각 보장별로 적용되는 기초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며, 각 보장별 1사고당의 보상한도액은 해당 기초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보상총액은 기초공제금액에 관계없이協회가 보상하여야 할 총액입니다.
2. 공제증권에 기재된 기초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a. 배상청구기준-기초공제금액이 손해배상 청구당으로 되어 있는 경우 기초공제 금액은 다음의 손해에 적용합니다.
 - (1) 신체장해배상책임 및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에 있어서는 각각
 - ① 피해자 1인의 신체장해에 대한 모든 손해 또는
 - ② 피해자 1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하나의 사고로 입은 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
 - (2) 신체장해배상책임과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고로 피해자 1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입은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
 - b. 사고기준-기초공제금액이 사고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기초공제금액은 다음의 손해에 적용합니다.
 - (1) 신체장해배상책임과 재물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각각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사고에 기인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

무면허 장비조작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공제계약은 건설기계 조종면허 없이 장비를 조작함으로써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 조종면허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75조에 규정된 사항을 따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발급하는 기능사 자격증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증은 조종면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공제조건은 변동 없습니다.

용도 외 장비사용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공제계약은 통상적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르지 않은 작업으로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공제조건은 변동 없습니다.

사용 능력 초과 장비사용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공제계약은 건설기계의 허용된 사용 능력을 뚜렷이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손해 발생의 원인이 사용 능력의 초과와 무관함을 입증할 때는 보상합니다.

다른 모든 공제조건은 변동 없습니다.

미등록 건설기계 보장제외 특별약관

협회는 이 증권의 제조건, 제규정 및 특별약관에 관계 없이 미등록 건설기계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하는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보장합니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건설기계 신규 등록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의되었습니다:

(1) 테러 행위에 해당하는 행동

본 양해각서의 목적에 맞도록 테러 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또 대중이나 대중의 어느 일부를 공포에 떨게 하려는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또는 유사한 목적을 내걸고 단독으로 행동하든 어떤 조직체(들)나 정부(들)를 대신해 또는 그와 연결되어 행동하든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나 일단의 사람들이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그런 것들 관련한 위협을 하는 행동을 포함하며 그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위 (1)호의 행동을 통제, 예방, 억제하거나 그와 관련되는 다른 방식으로 취하는 조치에 의하거나 그런 조치에서 유발되거나 또는 그와 관련되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성격의 것이든 손실, 손해, 상해 또는 비용이나 경비는 본 양해각서 또한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이 적용 제외를 근거로 하여 관련되는 모든 손실, 손해, 손상, 비용이나 경비가 본 공제의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공제협회가 주장하는 경우, 그 반대되는 사항을 입증하는 부담은 피공제자가 져야 합니다.

본 양해각서의 어느 부분이 실효성이 없거나 시행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진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은 계속 유효하고 완전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분진 및 소음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공제계약은 분진, 티끌, 소음에 기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고용인 배상책임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공제계약은 피공제자가 고용한 자가 고용의 상태에서 육체적 상해, 질병, 질환, 직업병, 장애, 쇼크, 정신적 분노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거나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책임이 없습니다.

물적손해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협회는 『제1장 보장범위,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g의 (1),(3)』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공제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 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

- (2) 신체장해배상책임과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사고에 기인된 모든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
- (3) 기초공제금액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에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응소하는 협회의 권리와 의무
 - ② 사고발생,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시 피공제자의 의무
- (4) 협회는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공제금액의 일부나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피공제자에게 통지하면 협회가 지급한 기초공제금액을 신속히 협회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서기2000년도 보장제외 특별약관

협회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고 2000년도 이전, 2000년도 또는 2000년도 이후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검색하는데 사용한 컴퓨터, 기타 장비 또는 시스템의 오작동이 직접적인 원인, 원인 제공, 유발인 경우에 저야 할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본 공제계약에 따라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실제 달력표시 일자로 날짜를 정확하게 인정합니다.
2. 저장 정보를 파일화하고 보유하며, 실제 달력표시일자가 아닌 다른 날짜로 취급한 결과로 데이터, 정보, 명령, 지시를 바르게 조정하거나, 처리하거나 설명합니다.
3. 저장 보유 정보를 파일화하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한 명령으로 실행되거나, 데이터 손실을 초래한 명령 또는 저장 보유 정보를 파일화하지 못한 결과로 나온 데이터를 바르게 처리하거나, 해당 자료를 해당일자 또는 그 후 일자로 고쳐서 처리합니다.

비용손해 특별약관

동 증권에서 사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손해는 보상한도액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테러행위 보장제외 특별약관

본 공제계약에 있는 그와 반대되는 조항의 내용이나 그와 관련되는 인정서에도 불구하고, 손실과 동시에 또는 다른 순서로 발생하여 그런 손실의 원인이 되는 기타 다른 동기나 사건과 관계없이, 다음 사항들에 의하거나 그런 것들에서 유발되거나 또는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성격의 것이든 모든 손실, 손해, 상해 또는 비용이나 경비에 대해서는 본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특정작업)

보장제외 특별약관

특정작업의 장소와 내용

보장제외 위험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증권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제1장 보장범위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에 다음 사항을 추가합니다.

이 공제는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기재된「폭발위험」, 「붕괴위험」 또는 「지하매설물 손해」로 발생한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타인이 피공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작업이나
생산물/완성작업위험에 해당하는 재물손해

용어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추가합니다.

1. 『폭발위험』이라 함은 파열 또는 폭발로 발생한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폭발위험은 냉·난방기, 압력을 사용한 파이핑, 휘발유 주유기, 기계나 동력전달장치로 발생하는 재물손해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붕괴위험』에는 건축물의 물적손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재물에 대한 손해를 포함합니다.

3. 『건축물의 물적손해』라 함은 아래에 기인하여 발생한 건물 및 건축물의 붕괴를 말합니다.

비탈작업, 굴착, 굴토, 매립, 터널뚫기, 흙쌓기 및 방축작업 또는 이전, 떠받치기, 지지건축, 건물이나 건축물의 철거, 구축 또는 빌딩 및 건축물의 구축대의 철거나 재구축

4. 『지하매설물 손해위험』이라 함은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재물에 입힌 손해를 말합니다.

5. 『지하매설물 손해』라 함은 비탈작업, 포장, 굴착, 착공, 매립, 흙쌓기 또는 파일을 박기 위하여 기계 설비를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지면 및 수면 아래에 있는 동력선, 도관, 파이프, 하수관, 탱크터널 및 이와 유사한 물건과 그 부착물에 입힌 손해를 말합니다.

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협회는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a.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물

- (1) 보석류 - 금, 은 등과 같은 모든 보석
- (2) 화폐류 - 화폐, 유가증권, 인지 등과 같은 모든 화폐
- (3) 도자기와 그 제품 - 도자기 및 도자기를 성분으로 만들어 지는 제품
- (4) 유리와 그 제품 - 유리 및 유리를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제품
- (5) 담배와 그 제품
- (6) 화장품 및 의약품
- (7) 가축류 및 계란
- (8) 시계, 모피류, 서화류, 골동품, 주류

b.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땀,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c.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d. 피공제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유숙인 또는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f. 재물의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g.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발품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h.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일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i.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공제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j.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k. 냉동, 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 냉장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l.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m. 피공제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피공제자 손해 보장제외 특별약관

협회는 이 증권의 제조건, 제규정 및 특별약관에 관계없이 약관 제2장 피공제자에서 규정한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피공제자와 소속이 동일한 직원의 신체장해 및 그 소속 회사의 재물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체계약 할인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서 정한 50대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협회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료 할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비영리법인단체
2. 단체의 구성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

[별첨] 단기요율표

일수	요율(%)	일수	요율(%)	일수	요율(%)	일수	요율(%)
1	5	66~69	29	154~156	53	256~260	77
2	6	70~73	30	157~160	54	261~264	78
3~4	7	74~76	31	161~164	55	265~269	79
5~6	8	77~80	32	165~167	56	270~273	80
7~8	9	81~83	33	168~171	57	274~278	81
9~10	10	84~87	34	172~175	58	279~282	82
11~12	11	88~91	35	176~178	59	283~287	83
13~14	12	92~94	36	179~182	60	288~291	84
15~16	13	95~98	37	183~187	61	292~296	85
17~18	14	99~102	38	188~191	62	297~301	86
19~20	15	103~105	39	192~196	63	302~305	87
21~22	16	106~109	40	197~200	64	306~310	88
23~25	17	110~113	41	201~205	65	311~314	89
26~29	18	114~116	42	206~209	66	315~319	90
30~32	19	117~120	43	210~214	67	320~323	91
33~36	20	121~124	44	215~218	68	324~328	92
37~40	21	125~127	45	219~223	69	329~332	93
41~43	22	128~131	46	224~228	70	333~337	94
44~47	23	132~135	47	229~232	71	338~342	95
48~51	24	136~138	48	233~237	72	343~346	96
52~54	25	139~142	49	238~241	73	347~351	97
55~58	26	143~146	50	242~246	74	352~355	98
59~62	27	147~149	51	247~250	75	356~360	99
63~65	28	150~153	52	251~255	76	361~365	100